

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청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55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중앙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학생 및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휴관일을 현행 주1회 월요일과 공휴일 휴관에서 월2회 월요일 휴관으로 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중앙도서관 휴관일 개정
(주1회 월요일 → 매월 첫째, 셋째주 월요일)

첨 부

-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매월 첫째, 셋째주 월요일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13조(휴관일)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하되,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1. 월요일 2. (생략) ② (생략)</p>	<p>제13조(휴관일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매월 첫째, 셋째주 월요일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